

청주지방법원 2022. 9. 7 선고 2021가단6984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7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8. 11. 19.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별지1 기재 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상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 명의에서 B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김성식

별지